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4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 | |
|-----------------------------|-------------|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1. 10 | 고 성 군 수 |
| 나. 회부일자 : 2005. 1. 11 | |
| 다. 상정·의결일자 : 2005. 1. 15 |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

2. 개정이유

- 관련법규 명칭변경 및 2005년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고성군 세 감면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 정리하고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에 혼란이 있어 간결화 함(안 제2조제2항)
- 나.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제 혜택을 부여함(안 제3조 제1항)
- 다. 협동화사업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들도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 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 마. 종합토지세의 감면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으므로 명확화 함(안 제33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세 감면조례 중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2004. 1. 20 개정으로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리와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국가유공자등”으로 간결화 하고,
- 장애인의 배우자가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자동차세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협동화사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들도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당초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 납부토록 되어 있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자동차를 제외한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세저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토록 하였음.
- 또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어 종합토지세의 경감액은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과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 감면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전방조종자동차는 어떤 차종을 말하는가?
- 답 :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봉고, 베스타, 그레이스, 프레지오 등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 문 : 신설되는 안 제15조의 2와 관련하여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

용 승용 자동차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가 얼마인가?

- 답 : 전방조종자동차에 해당하는 봉고, 베스타, 그레이스, 프레지오 등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 1대당 65,000원입니다.
- 문 : 전방조종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레조, 산타페, 스타렉스, 카렌스, 쏘렌토, 무쏘, 렉스턴 등에 대하여는 자동차세가 어떻게 되는가?
- 답 : 당초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2005년 부터 매년 33.3%씩 3년간 자동차세를 인상, 납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전방조종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레조, 산타페, 스타렉스 등은 자동차세를 100분50을 경감하더라도 1대당 20,000원~30,000 원정도 인상되는 현실입니다.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5. 1. 1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